

제2절 저소득 주민보호

1.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

가. 목 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에 대해 자활지원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고자 함이 주요 목적이다.

나. 개 요

-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생산적 복지」 이념과 시민단체, 정당, 정부 등 전국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99.9.7 제정 1년여의 준비를 거쳐 2000.5월부터 9월까지 수급자 선정을 위한 자산조사를 완료하고, 특례기준의 적용 및 소명절차를 거쳐 수급자를 선정하여 2000.10.1부터 급여를 개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 거택·자활보호의 구분을 없애고 근로능력의 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 주거급여를 선정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긴급급여를 통하여 긴급생계 지원이 필요한 수급권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였으며 최저생계비와 가구소득의 차액을 보충적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 생계급여를 위한 가구소득 산정 시 근로활동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일부를 공제하는 방안 등 근로유인 장치를 강구하였다.

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

- 우리구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2009년 12월말 현재 7,052세대 12,782명으로 인천시 10개 군·구 중에서 부평구에 이어 두 번째로 수급자가 많고, 매월 지속적 인 북한이탈주민의 집단 전입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특정보호대상 수급자가 특히 많은 편이며,

- 글로벌 경제불황에 따른 실업대란 등으로 수급 신청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임대주택의 건설로 저소득층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당분간 계속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2009.12.31 기준)

구 분	총수급자		일반수급자		특례수급자		시설수급자	
	가 구	인 원	가 구	인 원	가 구	인 원	개 소	인 원
2009년말	7,052	12,782	6,062	11,161	990	1,526	4	95
2008년말	6,516	11,930	5,518	10,393	998	1,454	3	83

○ 북한이탈 및 사할린 특례수급자 변동현황

(2009.12.31 기준)

구 분	2007년말		2008년말		2009년말		비 고
	가 구	인 원	가 구	인 원	가 구	인 원	
북한이탈	368	506	447	615	456	720	
사할린	365	582	356	555	352	546	

라.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계	국 비	시 비	구 비	비 고
2009년	35,990,307	32,391,276	2,519,321	1,079,710	

- 2009년도 기초생활보장사업의 총예산은 35,990,307천원으로, 12,782여명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계·주거급여를 비롯하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를 지원하였으며, 특히 2009년 저소득층에 대한 고유가대책의 일환으로 1월에는 수급자 가구당 20천원의 에너지보조금을 지원하여 고유가상황에서 수급자 가구의 가계 부담을 경감시켜 주었다.

마.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실적

- 우리구는 2008년도에는 연인원 181,586명에게 30,569,149천원의 생계·주거급여 등을 지원한 것에 비해 2009년도에는 총급여 지원액이 12.7% 증가한 34,454,777천원을 연인원 187,351명에게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였다.
-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실적

(단위 : 명/천원)

계		생계·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난방비 및 에너지보조금	
인원	지원액	인원	지원액	인원	지원액	인원	지원액	인원	지원액
187,351	34,454,777	142,011	31,880,425	5,681	1,576,292	301	144,100	39,358	853,960

바.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발굴·보호

- 2009년에는 보호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민을 발굴·보호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중단 1,044가구를 비롯하여 단전·단수가구 등 170가구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이들 중 3가구를 수급자 선정·보호 하였고, 20가구에 대하여 타법지원 및 민간 자원 연계 보호 조치하였다.

2.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신청

가. 목 적 :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 도모

나. 개 요

1) 재 원 : 국민주택기금

2) 조 건

- 대출액 : 보증금의 70% 범위내

(단위 : 천원)

구 분	대출가능금액	전세보증금 한도	대출비율
저소득가구	49,000	70,000	70%
다자녀가구	56,000	80,000	70%

- 대출이율 : 연 2%
(단,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제출시에는 연 3%, 전세금 반환채권 양도시 연 2.5%)
- 기 간 : 1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5년 혼합상환

3) 신청자격

- 7,000만원 이하의 전세계약을 체결(3자녀 이상 세대 8,000만원 이하)하고 임차보증금의 10% 이상을 지불한 자
- 저소득주민으로 소득기준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동 법에 서 규정한 최저생계비의 200%이하
- 부양가족(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만20세 미만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있는 만20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6개월 이상 부양가족 전원 무주택)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4) 선정제외대상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중형 이상 자동차 소유자(차량종류를 불문하고 세대구성원이 2대 이상을 소유한 경우 포함)
(중형자동차 : 1,600cc 이상 ~ 2,000cc 미만)
- 부동산 소유자
- 영구임대주택 · 국민임대주택(다가구매입임대 포함) ·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입주 예정자 및 계약 갱신자
(단, 2009. 4. 1이후 대출추천 신청한 영구임대주택 신규입주자는 대출 허용)
-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 및 기금취급은행의 신용정보관리지침에 의한 신용관리대상자와 여신취급 제한대상자
- 세대주 및 세대원중 1인이 국민주택기금 및 국민주택기금 이외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자
-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형제 · 자매 등 가족관계인 자의 소유주택이거나 이혼 후 전배우자 소유주택을 임차하는 등 사회통념상 임대차계약에

의한 자금수수가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연장된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미등기 건물 또는 무허가
- 임차주택에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 등)가 있는 주택
- 공동주택 또는 다가구(다중)주택 중 1가구의 일부분(단순히 일부 방만 임차하는 경우)을 임대차 하는 경우
- 본인 거주주택을 매도하고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주택
- 법인, 조합, 문중, 교회, 사찰, 임의단체 등 개인이 아닌 자가 소유중인 주택
(단,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이 있는 법인이 소유 중인 주택은 대상주택에 포함)

3. 영구임대주택 입주 신청

가. 목 적 :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안정 도모

나. 개 요

1) 영구임대주택의 공급대상자는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의 자격을 지녀야 한다.

- 남동구 거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국가유공자로서 제1호의 수급자 소득수준 이하인 자
- 일군위안부, 북한이탈주민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시장이 인정하는 자

2) 선정제외대상

-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
- 인천광역시에서 거주한 기간이 신청일 현재 6월 미만인자
- 생업용, 보철용이 아닌 자동차 보유가구

3) 2009년 추진실적(접수)

구 분	계	만수주공	삼산주공	갈산주공	연수주공	연수시영	선택시영
2009년	638	472	28	19	45	36	38

4. 의료급여사업

가. 목 적

1977. 12. 31. 법률 제3076호로 의료급여사업이 시행되면서 국가재정으로 저소득층에게 의료급여혜택을 주는 공적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더불어 국민에 대한 의료보장책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으며,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나. 의료급여 수급권자 유형

1)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중 근로능력이 없는 세대, 보장시설 수급자 등
- 이재민, 의사상자,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 북한이탈주민, 5·18광주민중화운동 관련자
- 행려환자

2) 의료급여 수급권자 2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중 1종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

1) 1종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중 근로능력이 없는 세대, 보장시설 수급자, 특례수급권자 중 희귀난치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가 속한 세대
- 국가유공자 : 생활실태조사지침의 「소득계층등급기준표」에 의거 생활등급 9등급 이하로 분류된 세대, 8등급으로 분류된 세대 중 소년·소녀가장세대, 한부모세대, 65세 이상 노인 세대, 3등급 내지 8등급세대중 만성·장기질환 등으로 최근 1년 이내의 월평균 의료비를 공제한 월평균 소득 생활등급 9등급이하에 해당하는 자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행려환자 : 거소가 불분명하고 행정기관이 응급진료를 받게 했으며, 부양의무자가 없는 무연고자이거나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 받을 수 없는 자
- 중요무형문화재 :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 및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의사상자 :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의한 의사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 이재민 : 재해구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이재민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발생한 이재민
- 입양아동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특례법」에 의하여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 2종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중 1종에 해당되지 않는 자

라. 의료급여수급권자 현황

(단위 : 명)

종별	총계	1 종									2종	
		수급자	군입대자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	5·18관련자	북한이탈주민	의사자유족	시설수급자	입양아동	수급자	군입대자
계	13,551	6,741	39	577	1	38	845	8	95	47	5,069	91

마.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지원기준(진료비중 급여부분에 해당)

- 1) 1종(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 : 2007. 7. 1. 시행)
 - 외래진료시 1차 1,000원/ 2차 1,500원/ 3차 2,000원/ 약국 500원
 - 제외대상 : 임산부, 18세미만인 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장기이식환자, 가정간호대상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 2) 2종 : 국가부담 85%, 본인부담 15%

바. 진료절차

- 1) 지참물 : 의료급여증, 주민등록증
- 2) 절 차 : 1차, 2차, 3차 3단계로 하며 진료기관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진료담당 의사의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희망 진료기관에 제출한다.

사. 의료급여 사업

1) 의료급여 본인부담 환급금 지원

가) 목 적

의료급여 대상자로 본인부담금이 과다 납부된 금액을 환급하여 의료급여대상자의 공정한 의료지원 실현에 기여

나) 절 차

의료급여수급권자중 건강보험증을 사용하여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대상자 및 의료기관에 과다 납부한 본인부담금이 있는 대상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 확인후 본인부담금 환급금액을 결정하여 지원

다) 2009년 처리현황

구 분	금 액	인 원	보조비율	비 고
본인부담환급금	7,290천원	378명	국비:80,시비:20	

2) 의료급여 본인부담보상금 지원

가) 목 적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시 본인부담금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 보상하여 의료급여 부담 감소에 기여

나) 절 차

- 보상금 : 수급권자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매 30일간 일정금액(1종 : 2만원, 2종: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액의 50%를 보상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의 자료 확인후 수급권자의 신청을 받아 본인부담 보상금 지원
- 초과금 : 수급권자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매 30일간 5만원(1종), 매 6개월간 60만원(2종)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의 전액을 보상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의 자료 확인후 수급권자의 신청을 받아 본인부담 초과금 지원

다) 2009년 처리현황

구 분	금 액	인 원	보조비율	비 고
본인부담보상금	19,021천원	1,952명	국비:80, 시비:20	
본인부담초과금	4,011천원	30명		

3) 의료급여 요양비 지원

가) 목 적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요양비 지원을 통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상시적인 치료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치료환경 개선에 기여

나) 지원구분

복막 관류액 구입비, 자동복막 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비, 가정산소 치료에 사용되는 장비 임대료, 출산비(의료급여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

다) 지급요건 및 절차

구 분	대 상	제출서류	지급절차	지원액	비고
복막관류액 구입비	복막관류액을 구입·사용 만성신부전 환자	· 처방전 · 세금계산서 · 신청서	관련 서류 관할 보장 기관 제출 ↓ 지급 여부 결정 후 요양비 지급	보건복지가족부고시 건강보험약가기준액 범위 내 실구입가 지급	
소모성 재료비	자동복막투석시 소모성 재료를 구입·사용한 만성신부전 환자			1일 5,640원	
산소치료 요양비	동맥혈산소분압이 55mmHg 이하이거나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8%이하인 경우			1종: 120천원 2종: 102천원	
출산비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자	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사유 증빙 서류, 신청서		자녀당 250천원	

라) 2009년 처리현황

구 분	금 액	인 원	보 조 비 율	비 고
소 모 성 재 료 비	1,393천원	9명	국비 : 80%, 시비: 20%	
산 소 치 료 요 양 비	10,182천원	85명	국비 : 80%, 시비: 20%	

4) 장애인보장구 의료급여 지원

가) 목 적

등록장애인인 의료급여대상자에게 보장구에 대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

나) 지원절차

의료급여대상자 중 등록장애인이 의사의 처방전을 첨부하고 구청에 신청 후 적격여부 판단을 받아 보장구를 구입하여 구비서류(처방전, 검수확인서, 보장구영수증, 통장사본)를 첨부하여 보장구 구입비를 청구하면 보장구별 지원기준액 범위내에서 전액 지원한다.

다) 2009년 처리현황

구 분	금 액	인 원	보 조 비 율	비 고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197,309천원	270명	국비: 80%, 시비: 20%	

라) 사후관리

- 내구연한(최고 6년)내에 1인당 1회 지원하며, 지원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한다.
- 보장구에 사용되는 건전지등 소모품의 구입비 및 수리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5) 의료급여 대불금 지원

가) 목 적

의료급여2종대상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일정금액을 초과한 부분을 대불해 줌으로써 수급자의 의료비 부담경감에 기여한다.

나) 지원절차

의료급여 2종대상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환자 및 부양의무자가 대불신청하면 병원의 의료비를 확인하여 지원하며, 대불금 지원후 3개월 경과후 3개월마다 최대12회까지 분할납부한다.

다) 2009년 처리현황

(단위 : 명/천원)

구 분	대불현황		부과액		상환액		결손등		체납액		비고
	명	금액	명	금액	명	금액	명	금액	명	금액	
대불금	35	29,763	5	3,535	4	1,399	36	31,899	-	-	

라) 사후관리

- 대불금체납자에게 독촉고지서 월 1회 발송
- 대불금체납자 실태조사 및 정리(결손처분)는 연 1회 실시
- 상환의무자는 주소이전시 전입지에서 대불금 상환

6)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

가) 대 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부정수급자, 의료급여일수 초과자, 상해외인 및 의료급여기관(병원)의 정산심사, 원외처방, 중복청구로 인한 부당의료비

나) 2009년 처리현황

(단위 : 명/천원)

구 분	부당이득현황		부과액		상환액		결손등		체납액		비고
부당이득금	명	금액	명	금액	명	금액	명	금액	명	금액	
	54	161,943	18	70,346	13	29,141	13	14,925	46	188,223	

다) 사후관리

- 부당이득금체납자 독촉고지서 월1회 발송
- 부당이득금체납자 전수조사 연1회 실시
- 상환의무자는 주소이전시 전입지에서 부당이득금 상환

7) 의료급여대상자 사례관리

가) 목 적

질병, 빈곤 등 복합적 문제를 갖고 있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건강관련 정보, 상담 서비스 및 지원을 연계하여 수급대상자로 하여금 서비스 만족도 제고 및 자율적인 건강관리 능력 지원에 기여한다.

나) 대 상

연간 의료급여일수 365일 초과 이용자 중 건강관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결과 별도의 사례관리가 필요한 자, 전년도 의료급여일수 과다 이용자

다) 처리절차

직접방문이나 전화상담을 통해 사례관리 목적·방법·기간 등을 설명하여 동의를 얻은 후 최종사례관리자로 선정하여 기준에 적합하다고 사례관리에 동의하는 경우 직접 방문하여 불필요·과다의료 기관방문, 과다한 약제복용, 사회적 입원 등을 예방 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대상자에게 올바른 의료이용 행태를 교육하고 수행기록지 작성 후 대상자에게 필요한 자원이나 건강관리실 등을 연계하여 대상자로 하여금 자율적인 건강관리 능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라) 2009년 처리현황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비 고
의료급여사례관리	106건	176건	266건	508건	

※ 연간 사례관리 목표인원 : 사례관리사 1인당 240명

8) 의료급여 선택병의원제도

가) 목 적

의료급여연장승인 신청자 중 여러 의료급여기관 이용에 따른 중복투약 발생가능성이 높은 자를 대상으로 본인이 선택한 1~2개의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차기 연도말까지 급여일수를 연장·승인하여 올바른 의료급여기관 이용에 기여

나) 대 상

11개 고시질환으로 455일을 초과하거나, 희귀난치성질환으로 455일을 초과하거나 기타 질환으로 545일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및 자발적 참여자

다) 지원절차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대상자에 대하여 연장신청서와 함께 선택병의원제 신청서를 접수받아 선택의료급여기관 대상자 기준에 해당시 해당 수급권자와 의료급여기관에 적용 통보서를 발부하고 선택병의원 변경은 연 1회 가능하다.

라) 2009년 처리현황

구 분	건 수	자발적참여자	조건부승인	비 고
선택병의원제	146건	38건	108건	

9) 의료급여 상해외인 관리

가) 목 적

의료급여 대상자 또는 제3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의료급여를 받아 의료급여가 필요하게 된 경우 등에 있어 수급자 또는 제3자로부터 의료급여비용을 환수하여 의료급여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

나) 처리절차

- (1) 100만원 이하 : 시군구 조사대상으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매달 조사 대상자를 통보받아 진료기관 및 대상자를 조사하여 상해외인 여부 판단하여 공단통보후 부당이득금 결정시 환수한다.
- (2) 100만원 이상 : 건강보험공단 조사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조사하고 보장기관은 공단으로부터 조사내역서를 통보받아 상해외인 여부 판단하여 공단에 재통보한 후 부당이득금 결정시 환수한다.

다) 2009년 처리현황

(단위 : 건/천원)

구 분	건 수	통 보 금 액	정 당 급 여	부 당 이 득
100만원이상	364건	919,271	884,341	34,930
100만원이하	210건	152,629	146,077	6,552

10) 의료급여 중복청구 관리

가) 목 적

수급권자의 진료내역에 대하여 의료급여기관에서 이중청구된 자료를 확인하여 의료급여적용 여부 결정하여 의료급여 대상자의 공정한 의료지원 실현에 기여

나) 처리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매월 수급권자의 중복 청구가 된 내역에 대한 자료를 통보받아 각 의료기관으로 중복 청구된 내역에 대하여 통보하고 20일 이내에 진료기록을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후 진료기록을 확인하여 적용여부에 대하여 결정하고 환수 및 적용여부에 대하여 결정된 내역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한다.

다) 2009년 처리현황

(단위 : 건)

구 분	건 수	정 당 급 여	환 수 대 상
중복청구	463	256	207

라) 기타

이의신청을 받은 내역에 대하여 판단 여부가 확실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중복청구 여부에 대하여 조회하도록 한다.

아. 향후 전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의료급여사업 홍보를 통하여 의료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의료급여대상자가 의료지원을 받으며, 사례관리를 통한 올바른 의료이용 안내로 적정한 의료혜택 제공에 기여할 것이다.

5. 행려자 처리

가. 목 적

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임시거처로써 공공구호기관을 이용하게 하거나,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여 위기에 처한 행려자를 안전하게 구호

나. 개 요

1) 관련법령

- 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 운영 규칙 제2조
- 나)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4조(보호조치 등)
- 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시체 등의 처리)

2) 행려자 처리 절차

가) 일반행려자

- 임시거처, 숙식제공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귀향조치 또는 연고자에게 인계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시설이나 쉼터에 입소조치

나) 행려사망자

- 병의원의 영안실에 안치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에게 인계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리

다. 2009년 추진실적

(2009. 12. 31기준)

구 분	건 수	예 산	비 고
무연고사망자 장제처리	4	6,377천원	